

2026년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차지원 사업 공고

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「2026년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차지원 사업」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2월 13일

대전광역시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내용

- 사업명 : 2026년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 이차지원 사업
-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일부 보전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

- ##### □ 사업대상 :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19 ~ 39세의 청년 신혼부부 100쌍 /* 대출일자 기준 19세~39세에 해당하여야 함

정의 및 소득 기준

*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, 부부합산 기준 연 소득 1.5억원
(※ 혼인관계등록부 상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이면서 대출실행시 청년연령이어야 함)

- 용자취급은행 : IBK기업은행 신규대출 / IBK상생금융 전세대출(대전시)
- 신청기간 : 2026년 2월 19일(목) ~ 12월 11일(금) / *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
- 신청방법: 대전청년포털 온라인 신청(<https://www.daejeonyouthportal.kr/>)
- 주요내용
 - 대출한도: 2.5억원 이내(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금액 이내)
 - ※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(주택금융공사, 기업은행)의 대출(보증)심사 및 신용평가,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,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

- 지원금리: 2.5억원 이내 대출금 이자액의 1.6% 지원(공고일 현재)
- 본인부담금리 : 대출금리 - 지원금리
 - ※ 대출금리는 IBK기업은행 내부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/ 지원금리 1.6% 고정
- 취급은행 : IBK기업은행 (8개 지점)
 - 중구(서대전지점, 대전중앙로지점), 서구(대전지점, 대덕대로지점), 유성구(유성지점, 대덕테크노밸리지점), 대덕구(대전오정로지점, 대덕공단지점)
- 대출용도 :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(공고년도 이후 신규 전세대출신청 건부터 적용)
- 대출기간 :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(2년 단위 1회 연장 가능*, 최장 4년 이내)
 - ※ 대출기간 2년 / 1회 연장 가능 /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의 연장도 동일기간 1회만 가능
 - ※ 연장시 연장 시점의 기준금리, 지원금리 및 연장시점의 지원조건을 적용함(6번항 참조)

기한 연장 요건

*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대전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,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업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함.

2. 자격요건 및 대상주택

- 신청자격(신청일 기준, 모든 조건 만족)
 - 거주요건: 부부 모두 대전시 거주(부부합산 대전 거주 1년 이상)
 - 혼인신고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
 - ※ 2019. 1. 1. 이후 혼인신고, 예비신혼부부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필수, 미 제출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.
 - 소득요건: 부부합산 연소득이 1.5억원(세전) 이하
 - 주택소유: 부부 모두 무주택자
 - 국적여부: 내국인 지원
 - ※ 신청자, 계약자, 대출자가 동일인으로 내국인이고, 배우자가 외국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
 - 연령구분: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
 - ※ 신청자가 대출실행시 청년연령에 해당하여야 함
 - 지원 제외대상*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자

지원 제외대상

* 청년월세지원사업,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, 정부 및 타 지자체 주거안정 지원관련 유사사업과 동시 수혜 금지
 * 다만, 이전 지원사업 종료 및 다른 분야 사업 수혜자는 지원 가능함

□ 대상주택

- 전세보증금: 4.5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
 - ※ 건축물관리대장 용도란에 업무시설(주거용) 또는 이와 유사하게 표시된 경우에 한함.
 - ※ 제외주택: ①공공임대주택 ②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(증축 및 변경 포함)
 - ③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미등재 건축물(둘 다 등재가 되어있어야 지원, 하나만 등재 시 미지원) ④다가구 주택(다중주택) ⑤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의 가구가 전입신고가 된 주택으로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다가구(다중주택)으로 쓰이는 주택 ⑥ 기업은행 및 한국주택보증공사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 등

3. 신청접수 및 선정

□ 신청기간 : 2026년 2월 19일(목) ~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

※ 서류 착오나 보완서류 미제출 등으로 누락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.

□ 신청방법 : 대전청년포털(<https://www.daejeonyouthportal.kr/>)

※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의무사항 동의서는 공고문 서식 활용

□ 제출서류

- 공통 제출 서류 및 신청자 요건별 제출 서류(※ 1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함)

| 제출서류 | 내 용 | 발급처 |
|--|--|---|
|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의무사항 동의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공고문 참고 ▸ 본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작성 제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서식 서명 날인 |
| 주민등록초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<u>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필수(본인 및 배우자)</u> * 전입일 등 관련날짜 필수 *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①정부24(인터넷) ▸ 동행정복지센터 |
| 혼인관계증명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<u>발급대상자: 본인 및 배우자(본인 주민등록번호 표시)</u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①정부24(인터넷) ▸ 동행정복지센터 |
|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(부동산 전국조회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<u>발급대상자: 본인, 배우자</u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동행정복지센터 |
| 소득금액증명원 (최근년도 귀속분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<u>조회조건: 전체</u> 이력 출력본 필요 ▸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*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제출 **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“소득신고 사실없음 증명원” 제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①정부24(인터넷) ▸ 세무서 |

□ 대상자 선정

- 선정방법 :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(서류보완일)로부터 10일 내외¹⁾ 선정
- 선정결과²⁾ : 대전청년포털 로그인하여 확인
-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³⁾을 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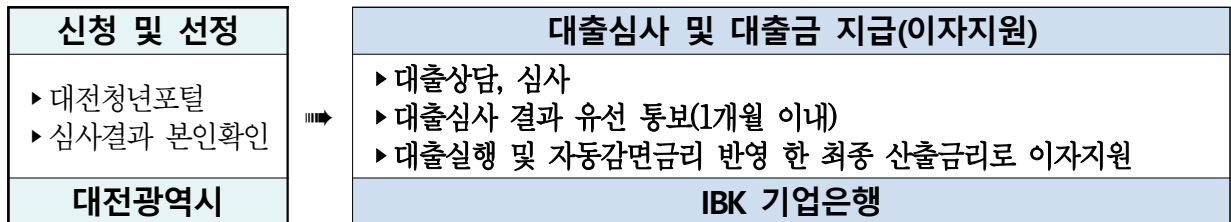
- 1) 예산 소진시까지 선정, 상황에 따라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.
- 2) 위의 선정결과 알림 사항은 대전시의 선정 서류심사 결과이며, 은행 대출심사는 관련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고,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.
- 3) 대출 미실행 여부를 본인이 증명할 경우, 사업 재신청 가능. 선정 후 90일 이내 포기서 제출시는 본인 증명 생략

□ 선정취소

○ 아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용자취소 및 기업은행 대출은 상환해야 함

-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
-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대출자금을 지원받은 경우
- ③ 이차보전금 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
-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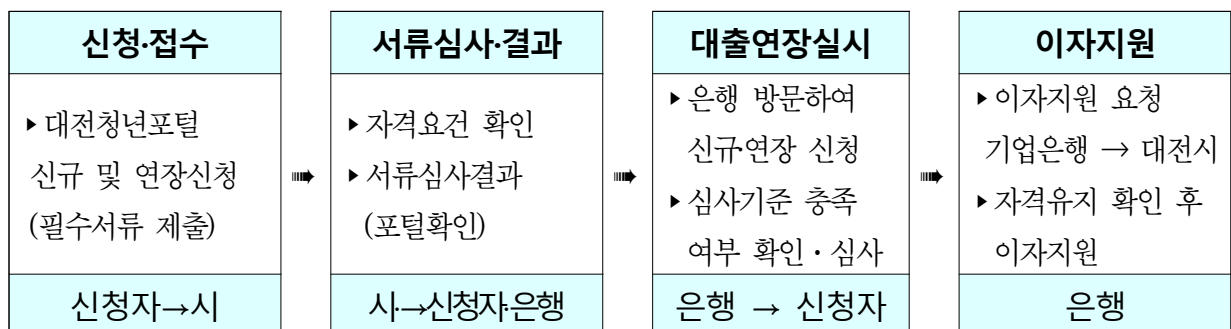
4. 신청 및 대출절차 /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



※ 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개인신용도, 소득유무, 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청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, 사업대상자 선정 후 은행의 대출심사에 따라 90일 이내에 예산 범위내 대출 실행하여야 함

5. 이자지원 주요절차, 지원중단 및 연장

□ 이자지원 주요 절차



□ 이자지원 중단 사유

| 대출기간 중 | 기한연장 시 | 비고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대출주택에서 이사가는 경우 ②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③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④ 임대차계약 종료 ⑤ 유사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⑥ 혼인 종료 및 배우자가 바뀐 경우 | ① 본인 및 배우자 나이39세 초과 ② 소득 요건 초과 ③ 대전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④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⑤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⑥ 유사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⑦ 혼인 종료 및 배우자가 바뀐 경우 ⑧ 대출기간 중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※연장신청 시 당해연도 공고문 기준으로 요건심사 |

※ 대상자 자격요건 사후확인(임차지 거주여부, 주택소유 여부, 주거급여 수급 여부) 후, 자격요건 위반자는 해당기간 이자 미지원 및 대상에서 제외되며, 중단사유 발생시점 이후 지원된 이자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및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.

□ 이자지원 연장

- 연장신청 : 전·월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한달 내외부터 연장 신청서 및 본 지원사업 연장 시 공고문 필요서류 제출
- 연장조건 :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자격기준 및 전세계약 유지
 - ①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
 - ②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
 - ③ 나이, 소득요건 등 연장 시점 공고문의 자격요건 유지
 -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업은행의 대출심사 기준 충족
-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하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
 - ※ 연장 불가 또는 미연장시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. 또한 만료일에 임박하여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, 기한 내 대출연장이 불가능 할 수 있을 수 있으니 최소 3주 전에는 연장신청 바람

6. 선정자에 대한 사후 확인사항

□ 확인내용 : 주소지(임차지) 실거주 여부 / 주택소유 여부 / 주거급여 대상자 및 다른 지원 사업 참여 여부, 결혼 유지 여부 등

□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 조치 사항

- 자격요건 위반자 통지 후 위반기간 이자 미지원 및 지원종료
- 기지급 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
 - ※ 자격요건 위반사항 발생 즉시 시와 은행에서는 상호통보 후 대출금 전체 상환 필요

7. 기타사항

-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**생애 1회**로 제한합니다. **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**합니다.
-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용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공고문 및 FAQ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이니, 면밀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.
-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본 사업 관련 대출이력이 있거나,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*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.

* 대출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, 타 은행 송금수수료,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비용 등

| 사업자 선정 문의 | 대출가능여부 조회,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| |
|---|---|--|
| 대전광역시 콜센터 ☎ 042-120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☎ 042-270-0832 | 기업은행 8개 지점 서 대 전 지 점 ☎ 535-8993 대전중앙로지점 ☎ 242-0092 대 전 지 점 ☎ 488-8163 대 덕 대 로 지 점 ☎ 471-2541 유 성 지 점 ☎ 826-8143 대 투 투 노 벨 지 점 ☎ 671-6663 대전오정로지점 ☎ 638-6170 대 덕 공 단 지 점 ☎ 931-8492 | |

※ 대출자격 요건 등 대출 실행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차지원 참여신청서

- 빈칸에 기입하여 주세요.
- 기재사항의 허위·누락·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| I. 기본정보 | | | |
|---|--|---|---------------|
| 신청인 (대출자) | 이름 | | 주민등록번호 |
| | 주소 | | |
| | 스마트폰 | | 이메일 |
| | 연소득(세전) | | 대전전입일 |
| 배우자 | 이름 | | 주민등록번호 |
| | 주소 | | |
| | 스마트폰 | | 이메일 |
| | 연소득(세전) | | 대전전입일 |
| II. 혼인신고 관련 | | | |
| 혼인신고일 | | 자녀 | 명(남자 명, 여자 명) |
| III. 제출서류 내역 | | | |
| 주민등록초본 (5년이상 주소변동) | 남편 <input type="checkbox"/> , 부인 <input type="checkbox"/> | 제출방법(전자지갑 <input type="checkbox"/> , 이메일 <input type="checkbox"/> , 우편 <input type="checkbox"/>) | |
| 혼인관계증명서 | 증명서 <input type="checkbox"/> , 예정 <input type="checkbox"/> | 제출방법(전자지갑 <input type="checkbox"/> , 이메일 <input type="checkbox"/> , 우편 <input type="checkbox"/>) | |
|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(부동산 전국조회) | 남편 <input type="checkbox"/> , 부인 <input type="checkbox"/> | 제출방법(이메일 <input type="checkbox"/> , 우편 <input type="checkbox"/>) | |
| 소득금액 증명원 (최근년도 귀속분) | 남편 <input type="checkbox"/> , 부인 <input type="checkbox"/> | 제출방법(전자지갑 <input type="checkbox"/> , 이메일 <input type="checkbox"/> , 우편 <input type="checkbox"/>) | |
| IV. 제출서류 확인 | | | |
| <p>1.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</p> <p>2. 본인은 「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대출 이차지원 사업」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가 위조나 변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, 위변조가 확인되었을 경우 이차지원 중단 및 기지급된 이자를 반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 <p>3. 제출서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행정기관 조회 미동의시, 또는 기타 정보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선정이 늦어지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기내용은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.</p> | | | |
| 2026년 월 일 | | | |
| 서약자 (신청인) | | 성 명 : | (서명 또는 인) |
| 서약자 (배우자) | | 성 명 : | (서명 또는 인) |
| 대전광역시장 귀하 | | | |

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

■ 본인은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차지원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본인, 배우자 및 동거 가족에 대해 지속적인 조건만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, 사업추진을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및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, 수집 이용,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
유의사항 (개인정보 수집 목적·관리방법,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)

- 수집된 개인정보자료·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차지원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고, 「공공기록물관리예관법률」에 따라 관리·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사업에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■ 본인 및 가족 동의(자녀는 결혼·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,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)

| 구 분 | 성 명 | 생년월일 | 서 명 | |
|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| 개인정보 제공 동의 | 민감정보 제공 동의 |
| 본인 | | | 자필서명 | 자필서명 |
| 배우자 | | | 자필서명 | 자필서명 |

※ 사업진행을 위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 항목 (밑줄은 민감정보)

| 본 인(예시) | 배우자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<u>주민등록등본</u> ■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■ <u>혼인관계증명서</u> 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유사자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<u>주민등록등본</u> ■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■ <u>혼인관계증명서</u> 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유사자료 |

※ 자료제공 기관

- * 기업은행: 사업수행을 위한 정보제공
- * 시(내부보관): 중복수혜 조회, 업무 처리를 위한 자료 보관
- * 행정정보 조회를 위해 정보조회가 필요한 기관
- * 기타 자료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

2026년 월 일

서약자 (신청인)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서약자 (배우자)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대전광역시 귀하

1. 준수사항(지원기간 내)

- 스마트폰 번호 및 이메일 변경시 반드시 대전청년정책 및 기업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. (청년정책과 042-270-0832)
- 대전광역시의 전세대출받은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. (이사 불가)
-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. (이혼 불가)
- 전세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상환받은 경우 즉시 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.
- 지원받은 전세주택을 재임대해서는 안 됩니다.
- 전세대출금은 전세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.
- 임대인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
 - 전세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
 - 확정일자 완료
 - 기타 필요사항
- 기업은행의 용자승인이 결정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용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기업은행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합니다.
- 지원받는 기간내에 유사지원사업으로 용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대출금리에서 지원금리를 뺀 본인부담금리는 기업은행에 납부해야 하며, 연체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2. 준수사항 미이행시 연장이 불가하거나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.

지원신청자 의무사항에 동의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)

대전광역시장 귀하